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실납세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관세법에서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이 있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및 반도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법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사유 확대 (법 제21조)

-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상향조정 (법 제42조의2)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30% 감면** (종전 2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종전 1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종전과 같음)

3.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법 제56조의2)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4.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 확대 (법 제116조의2)

- **관세 포탈죄 등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 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의 공개 가능 조항 신설.

5.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가능 규정 신설 (법 제116조의6)

-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6.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및 수출입 검사 수수료 폐지 (법 제246조의2, 제247조)

- 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물품” 손실보상을 “물품 등”의 손실보상으로 범위 확대.
-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 폐지.

7.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마약류 차단을 위한 조항 신설 (법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II. 관세법 시행령

1.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수수료 규정 보완 (시행령 제285조의7 등)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관세법 시행령 내용에서 제외.

III.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 감면 환경오염방지 물품 범위 확대 및 기한 연장 (시행규칙 제46조)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2.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 상향 (시행규칙 제48조)

-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3. 재수출면세대상 반도체 제조 관련 물품 신설 (시행규칙 제50조)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규정 신설.

IV. 시행일자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2024. 1. 1.
- 관세법 시행령 : 2023. 12. 12.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관세법_개정문개정이유
- [붙임2]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
- [붙임3] 관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 [붙임4] 관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 [붙임5] 관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 [붙임6] 관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I Contact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